

「 가 」

[2010.10.22] [

161 , 2010. 7.21,]

() 042 - 481 - 7071,7517,7106,7445
() 02 - 2150 - 5223

1

1 () 「 가 」
. < 2005.9.8 >

2 () . < 2003.12.12, 2005.9.8, 2006.5.25 >

1. " " , 「 가 」 22 (.) , 「 가 」 (" ") 6 1 (.) 「 가 」 24 (.)

2. " " 「 가 」 (" ")
2 1 가 「 가가 」 가가 가

3 ()

2 가

4 (가) 9 가
가 .

5 (가 가) 9 1 1 가
가 가 , 가 6

1 4 5 가 . < 1999.9.9, 2009.3.5 >

1. 가

2. 가

3. 2

가
9 1 3 가

가 , . < 1999.9.9, 2009.3.5 >

6 (가 가) . . ()

9 1 2 가 가 가 가

. < 1999.9.9, 2009.3.5 >

1.

. 가

2.

. 가

3.

.

4.

. 8 1 (10)

5.

. () 8 2 (3)

가 가 가 가

.

1. 가

2.

3.

4.

5.

6.

7.

1 6 8 1 10

8.

2 7 8 2 3

1 2 가

가 1 2 . < 1999.9.9, 2009.3.5 >

7 (가 가) 6 1 가 가 . < 1998.2.23, 1999.9.9, 2005.9.8, 2009.3.5 >

1. 가 「 」 15 가 . , 가 가

2. 10 1 3 1 가 1 1 가 가 가 100 15 가 . < 1999.9.9, 2005.9.8, 2007.10.10, 2009.3.5, 2010.7.21 >

1. 「 가 」 10 가

2. ()

8 (가 가) 가 가 가

1 .

1. : 100 6

2. • • : 100 14

3. • •가 • : 100 8

4. • • : 100 9

5. • • • : 100 14

6. • • • • • : 100 8

7. • : 100 12

8. 1 • : 100 6

9. • • • : 100 7

10. : 100 8

11. • : 100 11

12. : 100 5

가 가 가

. ,

가 . < 1999.9.9, 2007.10.10, 2009.3.5 >

3. 「 」

4. 「 」

5. 「 」

1 가 가 가 가 6

1 2 1 가

가 1 가 , 1 1 가가

가 가가 .

2 「 가가 」 12 1 「 」 106 1

가가 가 가

가 가가 6 1

.< [1999.9.9, 2005.9.8](#)>

12 (가) 17 가

가 .

1

가 가 .

13 (가) 20 2

가 가 27 1

가 .

3

14 (가) 12 1 4 " " 「 」

168 . 「 」 111 「 가가 」 5

.< [1999.9.9, 2000.12.30,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09.3.5](#)>

가 1

, 12 1 2 3

()

.< [1998.2.23, 1999.9.9, 2006.5.25, 2007.10.10](#)>

15 가

가 2 .< [2002.8.24](#)>

15 (가)

가 . .

1 가

.< 2006.5.25, 2007.10.10, 2009.3.5, 2010.7.21 >

1.

가.

. 가· 가· · ()

. <2006.7.5>

. <2006.7.5>

.

2.

·

가.

. 가· 가· · ()

. <2006.7.5>

. <2006.7.5>

. 3 3 「 」 2

8 {

. 13 4 ·

(" ") }

.

3.

가.

. 가· 가· · ()

. <2006.7.5>

. <2006.7.5>

.

2 가 「 」

21 1

. , 가 가

() .< 2006.7.5, 2007.10.10,

2010.7.21 >

1.

,

2. ()

3. ()

1 가 1

가 .< 2006.7.5>

1

.< 2006.5.25, 2006.7.5, 2007.10.10 >

가

5

.< 2006.7.5 >

가

.< 2006.7.5 >

1. 가

2.

3. 가

가

5

.< 2007.10.10 >

[2002.8.24]

16 (가)

가

가 76

가

1

17 (가)

12

가

가

18 (가)

14

16

, 76

가

.< 2009.3.5 >

1. 가· 「

」

가

2.

19 () 17

1

1. 1 가

2. 1 가 가

3. 가 · 가

20 ()

- 1.
- 2. 36
- 3. 47 2
- 4.

21 (2) 2

가

22 ()

10 2

가

가

가

1

가 100 5

23 (가) 13 2

가 「 」 21 4 , 36

가

[[2010.7.21](#)]

23 2(가) 13 4

가

1

가

7

10

가

가

3

2

3

10

가

가

가 4

가

14 2

3

3

[[2010.7.21](#)]

[[23 2 23 3](#) <[2010.7.21](#)>]

23 3(2) 18 1 3 " "

. < [2009.3.5](#) >

1.

2. (檢針)

3.

4.

5. 1 4

[2006.5.25]

[23 2 <2010.7.21>]

24 () 21 1 1 " "

가 . < 2005.9.8, 2009.3.5 >

1. 「 」 () : 30

2. 「 」 : 3

21 1 6 " " .<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2009.3.5 >

1.

가. 「 」 () : 4 1

(" ")

. 「 」 : 7

2. . , ,

25 () 21 1

가 , ,

. 21 1 1 3 5 .

가 ,

.< 1996.12.31,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

1. . ,

가 .

가. . 1

. 가 (「

」) 1 .

2. 가 2

21 1 6 가

. . .

.< 1996.12.31, 2007.10.10>

가 ()

3

3

21 1

가

. , 21 1

6

2

, 21 1

8

.< 1996.12.31,

2009.3.5>

22

2

26 (가)

21 3

22 2

가

가

2

가

1

가

7 (

7)

5

.<

1996.12.31>

27 ()

23 1 1 3 .

6

9

가

가

.<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1.

가.

25 2 2

가

<1999.9.9>

2.

. 가

가

28

<1999.9.9>

29 ()

23 2

"

"

)

49 1

3

(

)

.< 1998.2.23, 2006.5.25>

- 1.
- 2.
- 3.
- 4. <2006.5.25>
- 5. <2006.5.25>
- 6.

23 2

1

.< 2006.5.25>

가

27

30 (가) 26

가

가

31 <2010.7.21>

32 ()

27

1 2

가 가

가

.< 1998.2.23>

33 (가) 30 2

"

"

.<

2006.12.29, 2009.3.5>

- 1.
- 2. • ()
- 3.

30 4

가

,

•

•

•

,

,

(

)• ()

)

가 5

•

.< 2006.12.29>

30 7

"

"

.<

1999.9.9,

2000.12.30, 2005.9.8, 2006.12.29, 2009.3.5>

- 1. •가 •

2. 가 100 . .

34 ()

가 28

가 , 가

35 ()

26 5

49 1 3 (.

) . <

[1998.2.23, 2006.5.25, 2010.7.21](#) >

1.

2.

3.

4. <[2006.5.25](#)>

5. <[2006.5.25](#)>

6. <[2006.5.25](#)>

7.

26 5

1

.< [2006.5.25, 2010.7.21](#) >

36 ()

26 1 1 가

. , 2 , 3 가 , 4 가 5 .

[[2010.7.21](#)]

37 () 14 1 2 .

[[2009.3.5](#)]

4

38 <[2002.8.24](#)>

39 (가)

13

34

가 가 가 2 가 .

40 (가)

가

. , 15

1. 3 가

2. 가

3.

가 1

가 4 가

1 가 .<

[1996.12.31](#)>

41 () 14 1 3 " "

.<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1. 가

2.

3. 가 .

4.

4 2. <[2010.7.21](#)>

5. 42 5 . 6 ()

6. 6 8

7.

16 1 " " .<

[2010.7.21](#)>

1. 1 1 4

2. 43 7 ()

3.

4. 1 3

[[1996.12.31](#)]

[[2010.7.21](#)]

41 2() 14 2 2 "

가 " 「 」 3

.< [2009.3.5](#)>

- 1.
- 2.
- 3.

4. 1 3

[[2006.5.25](#)]

42 ()

가

5 (6)

1 1 1 가 가 3 가

가 .< [1999.9.9](#)>

1 ()
) 가 .< [1996.12.31](#)>

44 1

(" ") .< [1999.9.9, 2000.12.30](#)>

43 ()

가

3 가 37

, 37 2 4 1 ()

.< [1999.9.9, 2009.3.5](#)>

37 4 3

가 39 1 .<

[1999.9.9](#)>

44 () 39 4

.<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2006.12.29, 2009.3.5](#)>

1. 가 가

2.

3. 가

4. (1) 2

5. <2006.5.25>

6. 14 6

6 2. <2010.7.21>

6 3. 15 1

가.

. (가)

. <2006.12.29>

. <2006.12.29>

7. <2009.3.5>

7 2. 39 2

7 3. 43 5 (" ")

가 가

가 가

8. 44 1 42 6

9. 72 3 4

10. 79 가

11. 1 10

45 ()

가 가

. , 39 2

. < 2000.12.30, 2002.8.24 >

46 ()

44 1 42 6

44 2 가 가 가

10 .

47 () 가 가 가 2 45 46
가 가 가 2
47

1

48 () , , 39 2

. < 2000.12.30, 2002.8.24 >

18 3 가 가

11 2

가 1 가 . <

2010.7.21 >

<2000.12.30 >

5

49 () 7 , 8 9

1

1 가

50 6 1 3 5

. < 1996.12.31, 2003.12.12 >

50 () 49 가

. < 1999.9.9, 2009.3.5 >

51 ()

10

50

가 43

11

52 ()

가 12

62

53 ()

43 · 51 52

가 가

54 ()

43 · 51 52

37 2 2

가 가

가

< 2009.3.5 >

가 43 · 51 52

13

가

가

가 2

가

55 ()

가 43 · 51 52

37 2 1 · 3 4

가

(" ")

가

< 1996.12.31, 2005.9.8,

2006.12.29 >

1. 가

2.

3.

가.

(1) :

(2) : 30 , 78

90

(1) :

(2) :

(1) :

(2) :

4. 가

5.

가 1

가 .

56 () 가

가 43 · 51 52 37 2 5 7

(" ") 가

가

54 2 3 , , 1

57 () 가 가

(「 」 171 4

) 「 가 」 가 (

" 가 ") 「 가 」

가 14 가

. < [1999.9.9, 2005.9.8, 2009.3.5](#) >

가 1 가 . .

. 「 가 」

가 ()

. < [1999.9.9, 2005.9.8, 2009.3.5](#) >

58 () 57

1.

2.

3. 가

59 () 가 43 · 51 52

60 ()

「 」

. <

[2005.9.8 >](#)

1. 「 」 652

가

2. 「 」 657

3. 「 」 680

4.

5.

61 ()

가

55

가

62 (가)

64

66

가

63 ()

37 • 50

62

70

64 ()

38 1

43 • 51 52

가

. < [2003.12.12 >](#)

1.

2. 가

가

가

가

가

가

3.

• 가

4. 가

<2010.7.21>

65 () 가
47 2

66 (< 1996.12.31 >) <2010.7.21 >
52

가

.< 1996.12.31, 2010.7.21 >

2

(" ")가 가

.< 1996.12.31, 2010.7.21 >

1 3

가

< 1996.12.31, 2010.7.21 >

1 4

.< 1996.12.31 >

<1996.12.31 >

67 () 13 14

68 ()

69 () 13 1
14 1

70 () 60 1
1

.<

1999.9.9>

60 1

72 2

.< 1999.9.9 >

71 () 61
2

70

61 2

1 2

가

- 1.
- 2.
- 3.
- 4.
- 5.

72 ()

62 1

(

)

1. : 100 5
2. : 100 4
3. . () . . . : 100 3
4. 1 3 : 100 2

62 1

1 .< 1998.2.23, 2005.9.8 >

1. 「 」 1 .

(.) .

2. , . 가

3. 3 ()

73 ()

63

가

37 2

1

1 가 가 가

.< [1999.9.9, 2009.3.5](#)>

1. 37 2

2.

, , 가

3. , , 가가

, ,

30

4. 37 2 5

가 가 3

, 가

3 2 3

5
가

70 1 6

가 64 1 .<

[2000.12.30](#)>

74 (가) 64 1 1

, " 가" 65 3 1

가 , " 가 가 " 가 가 , " 가 "

가 .< [2005.9.8](#)>

1.

=

2. = 가 x

가 가 - 가

3. =

가

9 1 2

가

1 1

.

1 1

.< 2005.9.8>

1. 가 가 가 가가 가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64 1 2

(

)

.< 1999.9.9, 2009.3.5>

1. 가 가

2. . 「 」 . 가 가

.가

3. 7 1 1 . 가

4. 1 3

64 1

가(" 가 가")

가 가 . ,

. 가

가 가

64 3

69 2 . 3 5 .

가 가

= 가 가x()x

1 가 가 가

. , . 가 가 가 가

.< 1999.9.9, 2005.9.8, 2009.3.5>

1 23 3 (2006 5 25

) 「 」 .<

2006.12.29, 2010.7.21>

1 7

30

가 가

가

< 1999.9.9, 2005.9.8 >

4

가

. < 1999.9.9, 2009.3.5 >

74 2() 65

가

가

74 9 10 1

[1999.9.9]

74 3() 66

가

가

74 9 10 1

[1999.9.9]

75 () 74 1 . < 1996.12.31, 2005.9.8, 2010.7.21 >

1. : 1000 1

2. (16 3): 1000 1.5

3. 가 , (16 3) : 1000 2.5

4. : 1000 3

5. 가 : 1000 5

76 (가) 76 2 가

2 . < 2006.5.25 >

가

가

6

가

2 2 1 가 가
2 .< 2006.5.25 >
가 2 2

가 .
2 2 1 .
1 .< 2006.5.25 >
<2006.5.25 >

77 (가) 76 1 5
가 .
<1999.9.9 >
76 6 15
. < 2006.5.25 >
가 가
. < 2002.8.24 >

6

78 ()
80 2 1 15
가 , 가
가 . <
1996.12.31, 1998.2.23, 2006.5.25, 2007.10.10, 2009.3.5 >

- 1.
- 2.
- 3.
- 4.
- 5.
- 6.
- 7. ()
- 8. <2006.5.25 >
- 9.
- 10.

80 2 1

(" ")

80 3

가

1

.< 2007.10.10>

1

「

」 5

가

.< 2006.5.25,

2007.10.10, 2009.3.5>

79

(

)

78 1

「

」 5

. ,

.<

2007.10.10, 2009.3.5>

가

.< 2007.10.10, 2009.3.5>

1. 1 15

: 2 20

2. 1 16

: 10

가 2

.< 2007.10.10>

[2006.5.25]

79

2(

)

79 1

「

」 5

가

.< 2007.10.10>

[2006.5.25]

80

<2006.5.25>

81

(

)

79 1

79

2

.< 2009.3.5>

[2006.5.25]

81

2(

)

99 1

78 , 79 , 79 2 81 .

[2010.7.21]

7

< 2005.9.8 >

82 () 92 2 1 " "

. < 2009.3.5, 2010.7.21 >

1. . .

가.

.
.

2.

가.

.

가 가

(. . . , , 72 3)

()

(.)

. 42 4

3.

가.

(,)

.
.

[2005.9.8]

82 2() 93 " " 82 2 3

. < 2009.3.5 >

[2005.9.8]

83 ()

. < 2005.9.8 >

1. . .

2. ()

1

.< 1999.9.9, 2002.8.24, 2009.3.5>

84 () 「

」 2 3

1

1.

가

2.

가

3.

가

2

[2009.3.5]

< 511 ,1995. 7. 6>

1 () 1995 7 6

2 ()

3 ()

가

2 2 , 3

2

"

"

"

"

4 1 2

"

16 "

"

가

15 "

가

10 2

.

,

18

3

1

,

33

2

3

"

"

"

가

11 2

"

"

"

가

"

34 6 " 74 " " 가

73 " .

36 4 " " " 가

" .

4 ()

< 602 ,1996.12.31 >

() 1997 1 1 .
() ,

< 682 ,1998. 2.23 >

() .
() ,

< 104 ,1999. 9. 9 >

1 () . , 23 2 44 7 2001 1
1

2 () 1

3 (가) 가

2 가 .

4 (가) 74 4

() 1997 11 21

1997 11 21 1998 4 1

가

1. 가 가 () 가

가 (1) .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

5 ()

< 174 ,2000.12.30 >

()

(가) 2 가

< 251 ,2002. 3.25 >

()

() 23 2 44 7 2003 12 31 가

() ,

< 274 ,2002. 8.24 >

() 2002 9 30 , 14 3 83

()

2002 12 31 15 , 38 , 44 6 2· 7 2, 45 ,

48 77

() ,

< 335 ,2003.12.12>

() .

() 1 2

(가) 가 2

1 • 2 3 가 .

() ,

< 460 ,2005. 9. 8>

() , 27 2 2 2006 1 1

() 75 2 3

() 1

(가) 가

2 2 .

< 508 ,2006. 5.25>

() .

() 29 1 2 35

(가) 가

76 2 .

() ,

< 512 ,2006. 7. 5>(가)

< 536 ,2006.12.29 >

()

() 55 1 3 (2)

(2)

(가) 74 8

(가) 가

2 7

()

< 578 ,2007.10.10 >

1 ()

2 (가) 2 가

3 ()

< 58 ,2009. 3. 5 >

1 ()

2 (가 가 가) 74 7

3 ()

< 95 ,2009. 8.31 >

1 () 2009 9 1 .

2 () 가 .

< 161 ,2010. 7.21 >

1 () 3 . , 81 2

, 64 • 66 2 8 2011 1 1 .

2 (가) 2 7

가 가 .

3 (가) 14 2 1 2

가 100 가

가 44 6 2

4 ()

가 () 가

2 8 .

[별표 1] <개정 2005.9.8>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 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 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 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 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삭제 <2005.9.8>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카. 부지정지	2년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 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5년
(3) "(1)" 및 "(2)"외의 시설	3년
하. 기타 토목공사	1년
거.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 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 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너. 전문공사	
(1) 실내외장	1년
(2) 토 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 수	3년
(5) 도 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 붐	3년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 골을 제외한다)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 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 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온실설치공사	2년
(14) 보 링	1년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외하며, 이는 거목에 따른다)	1년

(16) 판 금	1년
(17) 보일러설치	1년
(18) 포 장	2년
(19) "(11)" 및 "(17)"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밀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제외한다)	3년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가. 성곽

- | | |
|-----------------------------|----|
| (1) 석성(石城) | |
|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5년 |
|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
|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 2년 |
| (3) 전축성(塼築城) | 3년 |
| (4) 목책성(木柵城) | 1년 |

나. 탑·석조물

- | | |
|--|----|
| (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
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
(石塔), 석교(石橋) 등 | 5년 |
| (2) 전탑(塼塔) | 3년 |
|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 7년 |

다. 목조건축물

- | | |
|---|-----|
| (1) 지붕 | |
| (가) 산자(檜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 3년 |
|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2년 |
|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2년 |
|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1년 |
| (2) 목부재(木部材) | |
| (가)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 3년 |
| (나) 그 밖의 구조재 | 2년 |
|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 1년 |
| (4) 기초 및 기단 | |
|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 10년 |
|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 7년 |
|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의
지대석 | 5년 |
|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 3년 |
|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
의 수리 | 2년 |
|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 2년 |

라. 담

- | | |
|---|----|
|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 5년 |
| (2) 그 밖의 사괴석담 | 3년 |
| (3)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 2년 |

마. 분 묘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2년
(2) 구조부	
(가)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5년
(나) 전축분(塼築墳)	3년
(다) 목곽묘(木槨墓)	1년
(3) 병풍석(屏風石)	3년
바. 도 로	
(1)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2년
(2) 포 장	
(가) 박석(薄石), 포방전(鋪方塼)	2년
(나)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1년
사. 철 물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2)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2) 식물보호	3년
(3) 발굴지 정비	2년
(4)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탕화, 옷칠 등	5년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1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5.2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 사항	등 록 관 서		등 록 일 자
	유 효 기 간부터까지
	등록종목(세부종목)			
<p>상기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유자격자로 귀부(처·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관서의 장 (인)</p>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p>※ 주의사항</p> <p>1. 이 증서는 해당 등록종목(세부종목)에 대한 입찰에 관하여 교부관서 및 다른 중앙관서에서 통용됩니다.</p> <p>2. 이 증서내용의 변경은 교부관서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p> <p>3. 기재사항중 추가 또는 정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교부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p>				

22221-20111일

210mm×297mm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표 2] <개정 2010.7.2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년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1년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8월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3월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년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1년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8월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3월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년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6월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년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8월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8월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6월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월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월	
5. 영 제76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3개월	
6. 영 제76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6월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월	
7.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1년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6월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1년 6월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1년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6월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월	
나. 삭제 <2010.7.21>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3월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월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월	

<p>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1개월
9.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6월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11.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6월
12.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월
13.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월
14. 영 제7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3월
15.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3월
16.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3개월. 다만, 2010년 8월 31일까지 는 1개월
17.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3월
18.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8월
19. 영 제76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20. 영 제7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자	. . .
	입찰건명			
입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p> <p>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0px;">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top: 10px;">귀하</p>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②	

22221-20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입찰참가신청증			처리기간	
			즉시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관서</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관서의 장 또는 성명 (인) 계약담당공무원</p> <p>_____ 귀하</p>				

22221-20411일

210mm×297mm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5.25>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p>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입찰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귀하</p>			

22221-20511일

210mm×297mm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5.25>

입찰서

1. 공고번호 : 제 _____ 호
2. 입찰건명 : _____
3. 준공(납품)연월일 : _____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상호 또는 법인명칭 : _____	전화번호 : _____
주소 : _____	
대표자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22221-20611일
95.6.30 승인

입찰번호			입찰금액									
백	십	일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짜인펜만을 사용합니다.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①⊖⊗⊙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번호를 기
4. 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로 상 표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부(처, 청)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현 장	
	지 체 상 금 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 공 연 월 일	· · ·
	준 공 연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p>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 계 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p>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연 대 보 증 인		(인)

22221-20711보
95.6.30 승인

257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서식]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부(처, 청)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 내 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지 체 상 금 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기 타 사 항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계 약 상 대 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인) (인) </div> </div>														
물 품 내 역 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품 명</th> <th style="width: 15%;">규 격</th> <th style="width: 15%;">단 위</th> <th style="width: 15%;">수 량</th> <th style="width: 15%;">단 가</th> <th style="width: 15%;">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22221-20811보 257mm×297mm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부(처, 청)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내용	용역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p>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 1. 기술용역입찰유의서 1부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인)</p> <p>계 약 상 대 자 (인)</p> </div>		

22221-20921보

95.6.30 승인

257mm×297mm

(신문용지 54g/m²)

용역내역서		
용역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액

22221-20922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계약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 . .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p>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p> <p>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p> <p>주 소 :</p> <p>대 표 자 : (인)</p> <p>주민(법인)등록번호 :</p> <p>_____ 귀하</p>			
<p>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p> <p>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p>			

22221-21011일

210mm×297mm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6.5.25>

질권설정동의서

입찰 등록국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한 [정기예금증서] 를(을) 「국가를

하자보수 수익증권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질권을 설정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구분 (등록국채등)	증서번호 (기번호)	액면금액 (좌수등)	보증금명	보증금액

- 구비서류 : 1. 해당 금융기관의 질권설정신청서 서식 1부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 1부
 3. 인감증명서(질권설정을) 1부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귀하

22221-21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5.25>

각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기관명 : _____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귀하

22221-214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서식 16] 삭제 <1996.12.31>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6.5.25>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
문서번호 :			
발신일 :			
수신 :			
참조 :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등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재기간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중앙관서의 장 (인)			

22221-21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